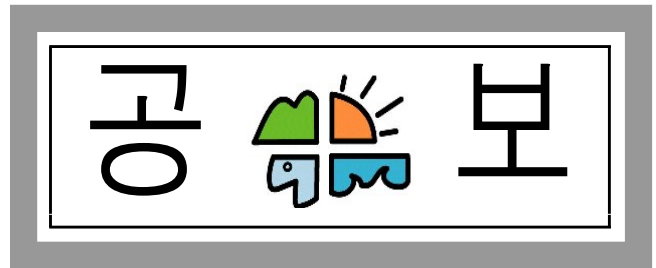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260호 2020년 5월 1일(금)

규 칙

-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2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 교정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1

공 고

- 공인 신규등록사항 공고 12

입법예고

-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3
-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 예고 23
-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33

발행 :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전화 : 639-2223, FAX : 639-2799)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1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465호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속초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한다.

②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물품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담당관은 부시장 이상, 과장은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로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②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③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④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⑤ 속초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53조제2항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제85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5조”로 개정한다.

⑥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관 직 명	본 정	지방의회	제1관서
회 계 책 임 관	행정국장	—	—
징 수 관	행정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	—	관서의 장
재 무 관	행정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분 임 재 무 관	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 한 경비)	—	—
총 괄 채 권 관 리 관	행정국장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부 채 관 리 관	기획예산과장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기획예산과장	—	—
통 합 지 출 관	회계과장	—	—
지 출 원	경리담당	의사담당	지출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외수입·징수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 는 각 담당	—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담당관·과 주무담당	—	주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의회사무과 농업기술센터 보 건 소 시립박물관 환경자원사업소 도서체육센터 동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담당	회계과장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백만원 미만	2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2백만원 미만	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부	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전부	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부	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부	전부	
8. 기타 경비 ¹⁾	전부	전부	

※ 합의 방법

1. 합의자가 회계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관리담당의,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는 경리담당의 합의를 받은 후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2. 합의자가 담당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관리담당의,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는 경리담당의 합의를 받는다.

1) 일상경비로 지출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부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리담당 합의를 받는다.(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포함)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전부	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전부	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전부	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전부	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전부	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전부	전부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전부	전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전부	전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전부	전부	

속초시 고시 제2020-64호

속초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 교정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교정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4월 27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⑨	공공청사	교정 시설	장사동 산50번지 일원	119,518	감)3,336	116,182	'12.03.16. (강고 제2012-78호)	20%	100%	4층 이하	

■ 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⑨	공공청사	- 공공청사 구역 변경 - 면적 : 119,518㎡ → 116,182㎡ (감 3,336㎡)	-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경미한 변경사항) ※ 측량조사 결과에 따른 면적감소

공 고

「속초시 공인 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공인 신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속 초 시 장

1. 공인 신규 등록 사유

— 민원창구용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2. 공인명 및 인영 : 2개

구분	공 인 명	인영	규격	사용일 또는 폐기일 (최초사용일)	비고
신규	속초시장인 (조양동인증기전용2호)		3.0×3.0cm	2020. 5. 1.	
신규	조양동장인 (조양동인증기전용2호)		2.4×2.4cm	2020. 5. 1.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4 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근거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안 제4조)
- 다.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생활문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속초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9조)
- 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아.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

1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1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문화팀
- 연락처 : 전화(033-639-2226), 팩스(033-639-234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문화팀(☎033-639-22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속초시 문화도시 구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시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주민 문화예술단체”란 주민(「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의 예술인은 제외한다)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집합·동호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4.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 구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4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 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5.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문화정책 수립으로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을 통해 지역문화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민계층을 균형 있게 참여시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수렴을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회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등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등의 상호간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의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속초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과 문

화도시 구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구성을 위한 시민제안 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
4. 문화 포럼, 원탁회의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안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 관련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역사, 문화재생, 생활문화, 관광, 도시재생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4.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문화업무 담당을 간사로, 문화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제10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8조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사업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체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정이유

속초시에 설치된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및 재원(안 제3조, 제4조)
- 다. 통합관리기금 용도(안 제5조)
- 라.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마. 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안 제9조)
- 바. 예탁기간 및 이자율(안 제10조)
- 사. 결손의 보전(안 제11조)

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기획예산과(예산팀)
- 연락처 : 전화(033-639-2214), 팩스(033-639-21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기획예산과 예산팀(☎033-639-2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속초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속초시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 이라 한다)”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 내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각 기금의 특정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기금운용관”이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을 말한다.
4.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 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시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

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이자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채 상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2.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

제6조(통합관리기금 관리·운용) ①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을 두되, 총괄기금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되며,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통합관리기금운용관 : 예산담당부서장

2. 통합관리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속초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속초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그 밖에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①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 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탁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각 기금별로 출연지분율에 각 기금별 기간산정 후 계산하여 적용하며, 매 회계연도 말에 지급하고 통합관리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에 결산한다.

제11조(결손의 보전)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되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되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되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되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⑤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되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⑥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기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하되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

다.

⑦ 「속초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되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⑧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되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속초시에 설치된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안 제2조)
- 다. 용자검토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용자절차 및 용자약정, 용자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마. 용자금의 이자계산(안 제6조)
- 바. 용자금의 원리금상환(안 제7조)

사.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기획예산과(예산팀)
- 연락처 : 전화(033-639-2214), 팩스(033-639-21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기획예산과 예산팀(☎033-639-221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검토 기준)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속초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융자신청 부서 등이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합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약정서를 작성하여 통합관리기금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통합관리기금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기간) ① 통합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대여된 다음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시장은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융자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1년은 365일로 한다.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등) ①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은 융자약정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해당 상환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른 시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를 받은 부서 등은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부터 15일전 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용자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통합관리기금 융자 신청서

신청부서	
사업명	
사업개요	
신청금액	
융자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부서의 장 인) 통합관리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통합관리기금 용자 약정서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용자금(이하 “용자금”이라 한다)을 용자함에 있어서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용자신청 부서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용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용자조건) “을”이 인수할 용자금의 용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연월일 : 년 월 일
2. 용자목적 :
3. 용자금액 : 금 원정(W)
4. 용자조건
 - 이 자 율 : 연 %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용자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년 월 일까지 이를 년 회 균등상환 방법으로 매년 월 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상환일은 거치기간 완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연도의 상환일로 한다.

② 용자금의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용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완료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용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월 일부터 해당연도 월 일까지의 용자금에 대한 이자 : 월 일
2. 해당연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용자금에 대한 이자 : 월 일

④ 용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하여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일에 용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납입하여야 할 기일 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은행의 기간별 연체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을”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
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을”은 융자금의 제1조제2호의 용자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갑”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을”은 융자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 의무) ① “을”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갑”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 상황
3. 융자금 운용 상황
4. 그 밖에 “갑”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갑”은 “을”에게 용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 “갑”과 “을”의 합의로서 수정할 수 있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약정서의 효력은 용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을”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일 일 년

갑 : 인

이인

[별지 제3호 서식]

통합관리기금 융자관리카드

(융자부서 :)

○ 융자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융 자 년월일	융 자 조 건		총 계			비 고
		거치/상환	이율(%)	계	원 금	이 자	

○ 상환계획 및 실적 (단위 : 원)

상 환 / 회 수 계 획				상 환 실 적				상 환 잔 액		
년월일	계	원금	이자	년월일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